



제417회국회(임시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방송통신설비 설치 대상의 범위·설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
■ 권영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589호)

2024.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방송통신설비 설치 대상의 범위·설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안 제40조의3제3항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권영세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6. 18.

다. 회 부 일 : 2024. 6.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하여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라디오 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설비의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공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대상, 기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방법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의 집행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재난방송 등을 수신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의 설치대상 범위, 설치의 기준 및 조사의 방법·절차 등 제도 운용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방송 등의 수신시설 설치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0조의3).

Ⅲ. 검토의견

1. 방송통신설비 설치 대상의 범위·설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안 제40조의3제3항 신설)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송통신설비 설치대상의 범위·설치기준 및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의3(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①·② (생략) <u><신설></u>	제40조의3(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설치대상의 범위·설치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나. 검토 의견

-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 제40조의3은 도로,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재난방송 등의 원활한 수신을 위하여 터널,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

역에 라디오 방송과 DMB 방송 수신에 필요한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러한 설비의 설치 여부 및 수신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법 제40조의3 제1항¹⁾은 도로,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등의 원활한 수신을 위하여 터널 또는 지하공간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라디오 및 이동멀티미디어(DMB) 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같은 항 후단에서는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조 제2항²⁾은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개정안은 법 제40조의3 제1항의 방송통신설비 설치대상의 범위·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3(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①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송등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라디오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
2. 「방송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

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3(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설치기준과 같은 조 제2항의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임.

○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할 때 예산 지원의 대상이 되는 설치 지원 대상 및 설치 지원 기준에 대해서 내부적인 기준을 두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터널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라디오·DMB 방송 수신을 위한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는 도로·도시철도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예산(매칭 비율 50%)을 지원하고 있음.

- 해당 예산은 세부사업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에 편성되어 있고, 2023년도에 2억원(20식 기준), 2024년도에 5억 9,300만원(59식 기준)이 편성되었음.

<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지원 사업의 예산 세부 산출 내역 >

구 분	2023년도 예산	2024년도 예산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지원	2억원 =FM/DMB 통합중계기 2,000만원 x 20식 x 50%	5억 9,300만원 =FM/DMB 통합중계기 2,010만원 x 59식 x 50%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업의 설치 예산 지원 시 터널과 지하공간(지하차도)를 설치 지원 대상으로 보고 있고, DMB(전계강도 : 45dB μ V/m 이상)와 라디오(전계강도

: 54dB μ V/m 이상) 방송 수신시설을 지원 기준으로 보고 있음.

< 재난방송 수신시설의 설치지원 대상 및 기준 >

구분	설치 지원 대상 및 기준
설치 지원 대상	○ 터널 등급에 상관 없이 전체 터널 ○ 지하공간(지하차도) 지원
설치 지원 기준	○ DMB(전계강도 : 45dB μ V/m 이상) ○ FM 라디오(전계강도 : 54dB μ V/m 이상)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또한,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및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수행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주기로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여부 및 수신상태에 대하여 도로터널, 철도터널, 도시철도터널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조사하고 있음.

< 대상별 세부 조사방법 >

○ 도로터널: 조사 전문 차량지붕에 FM·DMB 전계강도 측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반도로 40km/h, 고속도로 60km/h 속도로 주행하며 측정
○ 철도터널: 철도 터널 내부에서 도보로 이동하며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안전 등의 문제로 철도차량 탑승하여 내부에서 측정
○ 도시철도터널(지하철): 휴대용 측정설비를 활용하여 측정자가 승강장 중앙, 왼쪽, 오른쪽 끝 등을 측정하고, 도시철도차량 내부에서 역사간 지하구간 측정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 대상은 지상파 DMB의 경우 KBS, MBC, 지역민방의 3개 채널, FM 라디오의 경우 KBS-1 FM,

MBC, 지역민방, 교육방송, 교통방송(TBN)의 5개의 채널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를 각 분기별로 절차를 나누어 다음과 같이 수행하고 있음.

< 일정별 추진절차 >

1월 ~ 3월	4월 ~ 6월	7월 ~ 9월	10 ~ 12월
○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 현황조사 (기관별 설치계획 포함) ○ 전수 측정 터널 현황 및 측정 계획 수립	○ 세부 측정 계획 확정 및 시설기관 협조 요청 ○ 시설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세부 협의	○ 재난방송 수신환경 측정 실시 ○ 수신환경 DB 구축	○ 시설기관 등의 제기 터널 대상 재난방송 수신환경 재측정 ○ 수신환경 측정결과 분석 및 최종 결과보고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한편, 현재 법 제40조의3 제1항에 근거하여 도로 등의 소유자등은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방송통신설비 설치 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2023년 기준 DMB 수신불량률은 68.4%, FM 라디오 수신불량률은 68.2%로 불량률이 높은 상황임.

< 재난방송 수신환경 현황(2023년) >

구 분	터널 수	DMB		FM 라디오	
		양호(%)	불량(%)	양호(%)	불량(%)
도로터널	3,220	1,039(32.3%)	2,181(67.7%)	1,042(32.4%)	2,178(67.6%)
철도터널	664	46(6.0%)	618(94.4%)	15(2.0%)	649(98.0%)
지하철	1,072	478(44.6%)	594(55.4%)	519(48.4%)	553(51.6%)
합 계	4,956	1,563(31.6%)	3,393(68.4%)	1,576(31.8%)	3,380(68.2%)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개정안은 재난방송 등을 수신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의 설치대상 범위, 설치의 기준 및 조사의 방법·절차 등 제도 운용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방송 등의 수신시설 설치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도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의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방송통신설비의 설치대상 및 기준, 조사의 방법·절차 등 근거 마련을 위한 규정 신설에 동의하는 수용 입장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의 방송통신설비의 설치대상 및 기준을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방송수신 환경이 개선될 수 있어, 국민들이 재난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임.
- 다만, 개정안은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설치대상의 범위·설치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취지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예산 지원 대상의 범위와 기준에 대해 시행령에 규정하려는 취지라면, 방송통신설비의 설치대상의 범위·설치기준보다는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설치 지원 대상의 범위·설치 지원 기준”으로 법문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226